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5300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431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5300503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전수려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변론종결 2023. 3. 21.

판결선고 2023. 7. 11.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2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38,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24.부터 2018. 8.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C의 대표이사 B은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C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7. 8. 31.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8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이후 원고와 C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최종적으로 2021. 8. 2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B의 채무초과 상태

B은 2021. 6. 1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는 2021. 6. 3.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다가 2021. 8. 21. 원금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10. 22. 중소기업은행에 C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246,939,5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구상금 청구

원고는 C, B을 상대로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31150호로 대위변제금 등 합계 250,404,1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9.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22. 5. 26.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29,401,57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8호증, 을 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21. 6. 3.부터 C가 대출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약 2개월만인 2021. 8.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이 아니고 2008년경부터 당시까지의 발생한 C의 물품대금채무 421,941,441원을 하회하는 30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설정에 불과하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C의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등으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4,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08년 이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지속적으로 위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실제 수차례에 걸쳐 B 및 그의 가족들 소유의 재산이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0.자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86,800,000원의 근저당권, 2018. 3. 26.자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29,401,57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었고, 원고가 2022. 4. 29.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2022카단807696)을 받음에 따라 위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채권 229,401,574원 등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별지)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11층 호 84.92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군포시 대 33213.9㎡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3213.9분의 48.455

채권목록

위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에게 배당된 금
 229,401,574원 및 그 공탁이자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의 대한민국
 에 대한 배당금지청구채권.

